

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제정 | 2008. 2. 19. | 조례 제2077호 |
| 개정 | 2008. 9. 30. | 조례 제2112호(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) |
| 개정 | 2008. 9. 30. | 조례 제2113호 |
| 일부개정 | 2010. 10. 7. | 조례 제2272호 |
| 일부개정 | 2011. 5. 19. | 조례 제2325호 |
| 일부개정 | 2022. 10. 20. | 조례 제3444호 |
| 일부개정 | 2024. 4. 9. | 조례 제3631호 |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”(이하 “의원연구단체”라 한다)란 안양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안양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”(이하 “연구활동비”라 한다)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3. “의원정책개발비”란 정책 연구·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2. 10. 20.]
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의원연구단체 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10. 20.>

② 의원은 임기 중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0. 7.>

제4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

다)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8. 9. 30.>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<개정 2022. 10. 20.>

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의원정책개발비,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등록취소)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- 제9조(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등) ① 의장은 의원의 정책 연구·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0. 20.>
-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,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. <신설 2022. 10. 20.>
-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%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0. 10. 7., 2011. 5. 19., 2022. 10. 20.>
- ④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0. 20.>
- 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0. 20.>
-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2. 10. 20.>

[제목개정 2022. 10. 20.]

제10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제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0. 7., 2011. 5. 19.>

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0. 7.>

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0. 7.>

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연구결과는 「의원연구사례집」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고,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4. 9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08. 9. 30. 조례 제211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9. 30. 조례 제2113호>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0. 7. 조례 제22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5. 19. 조례 제2325호>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0. 20. 조례 제344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4. 9. 조례 제36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1. 단체명칭:
- 2. 설립목적:
- 3. 단체 인적사항

| 소속 상임위원회 | 성 명 | 서 명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: (인)

안양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

「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.

| | | |
|-------|-------|----|
| 연구단체명 | | |
| 변동의원 | 당초 | 의원 |
| | 변경 | 의원 |
| 변동일자 | 년 월 일 | |
| 변동사유 | | |
| 기타 | | |

년 월 일

신청인대표자: (인)

안양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연구활동계획서

「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연 구 단 체 명 | | |
| 연 구 내 용 | | 주 제 |
| | | 목 적 |
| 연 구 활 동 기 간 |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
|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 획 | | (별첨) |
| 연 구 활 동 비 | 총 액 | 금 원(₩) |
| | 산출내역 | (세부내역 별첨) |
| 기 타 | | |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: (인)

안양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

「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|
| 연 구 단 체 명 | | |
| 대 표 자 | | 의원 |
| 연 구 주 제 | | |
| 심사결과 | 내 용 | |
| | 결 과 | |

년 월 일

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(인)

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연구활동 (중간·결과) 보고서

「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○○년도 ○○연구활동 (중간·결과)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구단체명 | | | | |
| 연구내용 | 연구주제 | | | |
| | 연구목적 | | | |
| 연구활동비 | 수령액 | 금 | 원(₩) | |
| | 집행액 | 금 | 원(₩) | |
| | 잔액 | 금 | 원(₩) | |
| | 집행내역 | 자료수집 및 조사비 | 금 | 원(₩) |
| | |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| 금 | 원(₩) |
| 전문가 활동 경비 | | 금 | 원(₩) | |
| 기타 | | 금 | 원(₩) | |
| 특기사항 | 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 | | | |

- 붙임 1. 연구활동 (중간·결과)보고서 1부
- 2.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.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: (인)

안양시의회 의장 귀하